

## 2026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리바운드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구 자 균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희망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제고

#### □ 기본원칙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에서 미지정된 기업 중 재도전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 전문 컨설팅 제공
- 지원자격(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아 3년(접수 마감일 기준) 이상 운영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 중소·중견 기업의 부설연구소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하며,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신청 및 미지정 기록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 1회 이상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기업 연구역량 컨설팅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하였으나, 심사에서 지정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R&D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20백만원(기업당) × 5개 과제

구분	정부지원 비율	지원 기간 및 정부지원금	비고
내용	100%	4개월 / 20백만원	총 5개 과제 선정·지원

- ※ 기업부담금 및 정부납부기술료 없음
- ※ 정부지원금에서 회계정산 수수료 부담

2. 세부 내용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문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
  - (주관기관) '23~'26년 기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하였으나 심사에서 지정(선정)되지 못한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b>&lt;주관기관 신청시 유의사항&gt;</b>
▶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한 이력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운영하고 있을 것
▶ 신청일 이전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받은 이력이 없을 것
▶ 연구소 현황 자료를 공동기관에 제공하는 등 진단 및 컨설팅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을 것
▶ 컨설팅 결과를 이행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을 것

- (공동기관)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b>&lt;공동기관 신청시 유의사항&gt;</b>
▶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진단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실적이 있을 것
▶ 본 사업 신청 시 주관기관에 대한 맞춤형 발전로드맵 수립 계획을 제시할 것

## □ 신청방법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주관기관)은 컨설팅이 가능한 대학·출연연·기업 등의 전문기관(공동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 컨설팅 추진 계획 및 향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 등 컨설팅 이행 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될 경우 공동기관을 통해 기술경영·기술자문 등의 컨설팅 수행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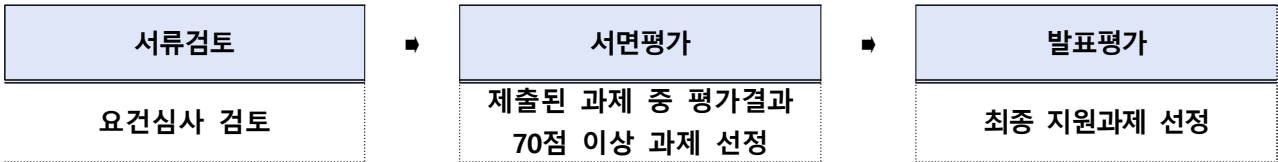
- 1단계(진단) : 기업(기업부설연구소) 역량 및 보유기술 경쟁력 분석 (약5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탈락 사유 검토 및 진단 등
- 2단계(설계) : 핵심기술 기획·개발 고도화 등 개선 방향 도출 (약4주)
  - 전문가를 통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방향성 검토 등
- 3단계(실행) : R&D 실질 역량 개선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약7주)
  - 기술전문가의 핵심기술 강화 및 경영전문가의 기업역량 컨설팅 등
  - ※ 컨설팅 결과 : ① 컨설팅 최종보고서(멘토링 내용, 발전로드맵 포함), 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발표자료(PPT)

## □ 지원과제 조건

- 정부 지원금의 사용비율은 주관기관(기업)은 전체 지원금의 15% 이하, 공동기관이 85% 이상 계상하여야 함
  - 지원금 사용용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준용
- 공동기관(대학, 출연연, 기업)은 컨설팅 결과물로 발전로드맵이 포함된 진단보고서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발표평가용 PPT를 주관기관에게 제공해야 함
- 주관기관(기업)은 공동기관의 진단보고서를 활용하여, 리바운드 컨설팅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사업에 신청해야 함

###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신청과제 수가 목표과제 수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면평가 생략

#### □ 평가기준

##### - [서면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사업수행역량	40	주관기관의 역량(20)
		공동기관의 역량(20)
수행능력	45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적절성(15)
		제안한 컨설팅 체계 및 구성 실현성(15)
		사업관리 및 예산계획의 효율성(15)
사업성과 효과성	15	사업 성과(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창출 가능성(15)

##### - [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목표 및 내용의 명확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전성, 구성 적절성, 충실성 등</li> <li>지원 타당성 및 적절성 등</li> </ul>
사업수행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기업의 역량 :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역량, R&amp;D인력, R&amp;D투자 실적, 정부 R&amp;D지원 실적, 내-외부 혁신활동, 기술(서비스) 경쟁력 등</li> <li>신청기업과 전문가(컨설팅 업체 등) 연계의 적합성</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및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li> <li>전문가의 역량(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여부), 유사사업 및 기업자문 실적, 컨설팅(기술자문, 경영자문 등) 운영 실적</li> <li>전문가(컨설팅 업체 등)와 신청기업 연계의 적합성</li> </ul>
R&D역량 제고 전략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R&amp;D역량 진단 및 역량 제고 계획의 구체성</li> <li>R&amp;D전략, 연구조직 및 인력, 연구관리체계, 기술성과관리, 연구인프라 등</li> <li>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제도 재도전 전략 등</li> </ul>
성과관리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설팅 결과 활용계획</li> <li>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재도전 계획</li> </ul>
사업비 구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비 구성의 적절성</li> <li>사업비 집행 계획의 투명성</li> </ul>

※ 평가절차, 일정 등은 추후 평가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필요시 평가지표 및 배점은 일부 변동 가능

#### 4. 신청서 제출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6.24(수) ~ 7.24(금)(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koita.or.kr) 사업공고 또는 공지사항에서 [붙임]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다음 제출처로 송부  
- 메일 주소 : mk2111@koita.or.kr  
※ PDF 파일 스캔본, 한글 원본 파일 전부 제출

##### □ 신청서류

- 과제수행계획서 1부(스캔본(PDF파일), 아래 한글 원본 파일)  
- 첨부서류
  - ① [서식 1], [서식 1-1] 계획서(주관-공동기관 작성)
  - ② [서식 1-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공동기관 작성)
  - ③ [서식 1-3]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이력 확인 자료(주관기관 제출)
  - ④ [서식 1-4]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예정) 확인서(주관기관 제출)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주관-공동기관 제출)

#### 5. 추진일정

절차	내용	추진일정	주체
사업공고	라바운드 컨설팅 공고	'26년 6월	과기정통부
▽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서 접수	'26년 6~7월	산기협
▽			
선정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26년 7~8월	산기협
▽			
협약체결/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5년 8월	산기협
▽			
과제수행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수행	'26년 9~12월	주관/공동기관
▽			
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27년 1월	산기협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 6. 지원제외 사항

- 지원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다음의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자격, 신청과제의 내용이 공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7. 기타사항

- 본 과제는 비R&D 과제이며,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음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에 도전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지원 가능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기업과 전문가(컨설팅 업체 등)는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해야 함
- 리바운드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이후, 1년 이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사업에 지원(신청)해야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본 과제는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을 사용하지 않음
- 사업비 사용 및 정산서류는 산기협과 위탁계약 체결한 회계법인에서 별도의 감사를 실시하며 회계정산비는 사업비 내 연구활동비로 부담
- 사업기간에 사업수행실적 점검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8. 관련 법령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신용조회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적용
- 각 내(내)역사업별로 지원 과제 수 대비 접수 건수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9.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 02-3460-9070)

붙임 리마운드 컨설팅 관련 서식 1부. 끝.